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5

2016-5호



-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등 4건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등 6건
-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등 6건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등 3건
-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부산시의회 장애인 의회교실 개최 등 4건
- 최근 제·개정 법령
 - 횡자안전법 등 3건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삼척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등 3건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Contents

충청남도 주요 제 · 개정 조례

- ▶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5)
- ▶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7)
- ▶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1)
- ▶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14)

최근 타 시 · 도 제 · 개정 조례

- ▶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17)
- ▶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19)
- ▶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1)
- ▶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 · 지원 조례 (23)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25)
- ▶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28)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 ▶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32)
- ▶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35)
- ▶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38)
- ▶ 여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 (40)
- ▶ 인제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42)
- ▶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4)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충남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47)
- ▶ 충남 초·중·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55)
- ▶ 사회심리적외상 청소년 지원방안 (61)

타 시·도 의회 주요 동향

- ▶ 부산시의회 장애인 의회교실 개최 (67)
- ▶ 대전시의회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68)
- ▶ 경기도의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69)
- ▶ 전남도의회 김영란법 적용대상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건의안 채택 (70)

최근 제·개정 법령

- ▶ 환자안전법 (73)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76)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 삼척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 (79)
- ▶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3)
-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87)





충청남도 주요 제·개정 조례



1.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30.] [충청남도조례 제4146호, 2016.6.30., 제정]

□ 주요목적

충청남도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경우 교통혼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방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공사시행자가 해당 공사장의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4. “공사시행자”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도로에서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적용대상은 도로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를 말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그 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시간대·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2. 공사·교통안내 및 교통통제 표지(우회안내가 필요할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
4. 공사시행 예고
5.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될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橫)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그 밖에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검토)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검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대행)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교통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정명령) 도지사는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30.] [충청남도조례 제4147호, 2016.6.30., 제정]

□ 주요목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물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녹색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시범사업
2.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도 소재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

너지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성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
2.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 ② 조성사업의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며, 기금의 조성은 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
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
3.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4.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건축도시과장

3. 기금출납원 : 녹색건축물 조성업무 담당 사무관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관리 공무원
2.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12조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12조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자문 등) 도지사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민간단체·공무원 등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30.] [충청남도조례 제4148호, 2016.6.30., 제정]

□ 주요목적

임무수행 중 순직이나 부상 후 순직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희생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를 말한다.

2. “장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순직소방공무원 등(이하 “순직소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자”라 한다)이 주관하여 그 절차를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장의의식(葬儀儀式)을 말한다.

가. 도장(道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나. 소방서장(葬): 해당 소방서장(長)

다. 소방학교장(葬): 소방학교장(長)

3. “가족장(葬)”이란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유가족이 치루는 장의의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상) 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3. 「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중 충청남도 내 소방관서에서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무요원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5조(장례식)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집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장(道葬)
2. 소방서장(葬)
3. 소방학교장(葬)
4. 가족장(葬)

제6조(장례식의 결정) 장례식은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유족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장례위원회) ①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해당 주관기관에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간 및 장소
2. 소방악대 및 참석인원·장비 동원
3. 부고의 작성, 송달, 도 및 해당 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4. 그 밖에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자로 하며, 장례위원은 주관자가 장례관련 인사(人事)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집행위원회)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방침
2. 실무작업단 구성 및 소관직무
3. 장례절차(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을 말한다) 진행
4.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를 포함한다)
5. 소요재원(예비비 등을 말한다) 확보방안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식 비용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장의 경비는 주관자가 부담하며, 순직자 소속 소방기관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제공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 2016.6.30.] [충청남도조례 제4149호, 2016.6.30., 제정]

□ 주요목적

충청남도 잠수어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진료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잠함병 정의) “잠함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상의 잠함병(감압병) 질환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 활동으로 발생한 잠함병 질환으로 제5조에 따른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 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받고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진료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제5조(진료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내에 소재하는 잠함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진료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비내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관은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진료기관의 지정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과다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제8조(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의 확인) ① 도지사는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진료) 진료비 지원대상 잠수어업인이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신고증명서 또는 잠수어업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어업인증을 미소지한 경우와 관련 확인 자료의 전달이나 확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진료비 청구 시 확인하여 정산한다.

제10조(자료요청) 도지사는 효율적인 진료비 지원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진료비 환수 등)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는 환수하여야 하고, 해당 잠수어업인에게 1년 이내 1회 적발시 6개월 동안 진료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시 1년 동안 진료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7.] [경기도조례 제5253호, 2016.6.7., 제정]

□ 주요목적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시·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순환골재 등의 용도) 의무사용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는 영 제4조에 따른다.

제6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제7조(품질기준 등)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35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8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강원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6.6.17.] [강원도조례 제4032호, 2016.6.17., 제정]

□ 주요목적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원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가공산업”이란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추진 및 추진 방향
2. 쌀가공품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
3.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4.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가공 산업단지 조성
5. 그 밖에 쌀가공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쌀가공산업 활성화·지원 등

2. 쌀가공산업 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 등
 3. 쌀가공산업에 관한 홍보책자·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4. 쌀가공품의 연구·조사·교육, 경영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
 5. 쌀가공품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6. 쌀가공품 등 소비촉진 및 식문화개선 사업
 7. 그 밖에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사업
- 제6조(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 상품화·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육성할 가치가 있는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법 제8조에 따른 가공용쌀 재배단지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 도지사는 쌀 이용 촉진 및 쌀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쌀가공품 홍보전시관 또는 쌀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포장·규격출하 및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품평회 등) ① 도지사는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선정·육성하기 위하여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수상자에게 쌀가공 품의 연구·개선 등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연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세계화 촉진 등) 도지사는 쌀가공산업의 육성, 쌀가공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품평회 등에 선정된 쌀가공품의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쌀가공산업 관련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3.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13.] [전라남도조례 제4069호, 2016.6.13., 제정]

□ 주요목적

전라남도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공동체 활성화 및 관광 여건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고유의 생태자원의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과 섬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섬 가꾸기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회적 경제”란 섬 지역의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 등 공동체 조직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섬 고유의 유·무형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소득창출,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섬 가꾸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섬 가꾸기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섬 가꾸기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가꾸기 추진전략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3.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섬 가꾸기 계획 수립·변경,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정책방향에

대한 사항을 자문·심의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전라남도 섬 가꾸기 주관부서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생태, 산림·조경, 문화, 관광 등 섬 관련 전문가
2.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섬개발팀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간지원조직 운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의 효율적인 추진과 섬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양성
2. 소득사업 발굴·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3. 섬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군, 마을 법인,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섬 관광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간지원조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섬 가꾸기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섬 가꾸기 사업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등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경상남도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 조례

[시행 2016.6.9.] [경상남도조례 제4155호, 2016.6.9., 제정]

□ 주요목적

「농촌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과 수산물품질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 학습단체”란 도지사가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물품질보급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중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의 농촌지도사업을 말한다.
3. “수산물품질보급사업”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기술보급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 학습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 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학습단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영농·영어와 생활 향상을 위한 선도 시범사업 추진
2. 선진농업기술 및 수산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
3. 농어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영농·영어 활동 지원
4. 농어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
5. 농촌환경 가꾸기 및 보전활동 지원 사업
6. 어촌환경 개선 및 해양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
7. 농어업인 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
8. 그 밖에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어업인 학습단체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업인 학습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학습단체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농어업인 학습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 및 수산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6.2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37호, 2016.6.22., 제정]

□ 주요목적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시책) 도지사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 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이용
- 5 사회공헌 자료 수집 및 홍보
- 6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장)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행정시장

4. 도민 20명 이상의 추천 동의를 받은 추천인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에 대한 심사 및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심사위원회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회공헌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2.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사회공헌장의 취소 및 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로부터 그 사회공헌장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을 받은 자가 기업 또는 기업인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하여 사회공헌장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정하여 사회공헌자에 대한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정보 수집 및 제공
2.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3. 사회공헌 실적 관리
4. 사회공헌 관련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사회공헌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7.1.1.] [전라남도조례 제4078호, 2016.6.30., 제정]

□ 주요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격 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천천히 배우는 학생실태조사 및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수립하는 교육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 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학교의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선별한다.

② 학교의 장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협의 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주요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 교육과정과장, 미래인재과장, 체육건강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교육복지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의 의원

2. 학교의 교원

3.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

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1. 수원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14.]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553호, 2016.6.14., 제정]

□ 주요목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관계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5.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6. “환기설비”이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사업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 관내에 있는 기관(전문연구기관, 대학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외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

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 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광명시 아이와 맘(Mom) 편한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시행 2016.6.22.]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181호, 2016.6.22., 제정]

□ 주요목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관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기본방향과 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출산 정책
- 2 맘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 3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 4 그 밖의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맘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이와 맘 편한 도시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과 민간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은 복지 관련 담당 국장, 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정책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산후조리원장, 기업 등 관계자
2.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성평등정책 전문가
4. 기관 실무 책임자 등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1명을 두며, 간사는 1명을 두되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3조에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2. 출산 정책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
3.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4.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를 지원하는 정책
5.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홍보, 임신·출산 지원, 보육·교육 지원, 일자리·주거 지원 분야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별로 15명 이내로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소관부서 팀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시행계획 및 정책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성남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시행 2016.7.21.]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009호, 2016.6.20., 제정]

□ 주요목적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주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
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여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

[시행 2016.6.30.] [경기도여주시조례 제480호, 2016.6.30., 제정]

□ 주요목적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촌에서 6개월 이상 생활 하면서 농촌의 지역 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유학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농촌유학 업무 관련 공무원
 4.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 농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인재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시행 2016.6.3.] [강원도인재군조례 제2287호, 2016.6.3., 제정]

□ 주요목적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인재군의 스포츠 발전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를 매개로 스포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스포츠 관련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창조적인 교환 활동을 말한다.
3.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부터 인재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2.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분 조성 및 홍보계획
3.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
4.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조사 및 정비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설치)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전지훈련팀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전국(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포츠마케팅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군 체육부서 과장, 인제군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스포츠 관련 기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팀 또는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3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257호, 2016.6.30., 제정]

□ 주요목적

부여군 소재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문화재 ‘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
2. “현장입회”란 각종 건설공사지역에 유적의 존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보존을 위하여 공사시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입회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전문가 2명의 검토”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포함한 개발 행위 등을 할 경우에 그 보호방안을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2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4. “전문가 3명의 검토”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포함한 개발 행위 등을 할 경우에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문화재 관련 3명이 검토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입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을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제4조(지원내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입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과 개발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1.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원
 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입회비는 1회 지원
-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매년 이 조례를 근거하여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장입회비, 전문가 2명 및 전문가 3명의 검토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현장입회는 부여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시행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현장입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입회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출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출연기관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출연금을 정산 반납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현장입회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재보존에 따른 토지매입)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 ② 토지매입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8조(매장문화재 발견의 처리)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매장문화재분포지역 등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향토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여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의거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는 문화재유존지역으로 공고하여 각종 건설공사시에 참고하여야 한다.
- ④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부여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절감 방안

<'16. 5. 27.(금) /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총 평



충남교육청 전산사업 추진 상 미흡한 부분을 분석하여 향후 전산사업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는 물론 예산

절감의 디딤돌을 마련한 자리로, 충남교육 발전과 충남교육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 스쿨넷 3단계 사업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음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 조재운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 충청남도교육청의 복잡한 전산관련 사업의 검토 결과
 - 스토리지(메일) 증설과 전산장비 교체 등에 있어서는 비용측면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나, 경과기간이 지난 제품으로 스토리지(메일) 증설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낭비 초래

- 이로 인한 투자보호 실패와 자산처분 이익까지 포기한 채 단종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장비의 조기에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의혹이 우려되므로 개선대책 필요

○ 스쿨넷 3단계 사업 추진 관련

- 인터넷 이용료 및 회선 등 가격 경쟁 배제와 보안장비 등급 사양의 하향화 금지
- 계약추진에 있어서도 홈페이지 공개, 제안요청서 공개기간 확보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필요

2 지정토론

① 서영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듀파인, 업무관리) 전면 개통은 학교 현장 사용자에게 대한 의견수렴과 현장 중심의 선제적 서비스를 통한 지방 교육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향상과 교육행정의 생산성, 편의성, 문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앞으로 정부3.0 정책운영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공개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어져야함
- 충남교육청 전산사업의 적정성 부분
 - i) 노후장비 교체의 주요인으로는 시스템 노후화에 장애발생률 증가, 기능 미흡,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낮은 TCO(Total Cost of Ownership) 등으로

-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보안패치 등 서비스 연속성의 확보 불가로 인한 시스템 개선사업 추진 애로
- 기존 부품 장애발생 시 신규부품 도입 불가하고, 기존 유지보수용 부품 수급이 어려워 장애 발생 시 장애시간이 증가
- 국가·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반드시 CC인증을 획득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함에도 일부 보안 제품의 경우 CC인증 유효 기간 만료 등에 따라 해당 시스템 변경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 등 운영 중인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진행 필요
- ii) 따라서, 사용자 증가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서비스 지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 부족, 로그 관리 기간 확보 등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 이후 전자문서 처리량(나이스, 에듀파인 연계) 증가 등 시스템 외적인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시스템 저장공간 확보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음

○ 전산사업의 예산 책정 관련

- i) 침입방지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 편성은 국가 조달 쇼핑몰 등록 제품, CC인증제품, 국가정보원 검증제품 등 이에 준한 사양을 구입하기에는 예산 책정 금액이 낮은 편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
- ii) 시스템 증설에 대한 예산 산정은 업무관리 CPU증설이나 백업 시스템 등의 도입시기가 2010년으로 최초 구입단가의 적용이 어려운 현실로 견적 등을 통하여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보임
- iii) 증설이 아닌 신규 장비 도입은 단순 장비구매 뿐만 아니라 관리 S/W(서버관리S/W, 보안S/W) 구매비용과 자료이관 비용 등으로

소요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 예산 과다 집행 및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설을 고려한 낮은 예산으로 책정됨

② 신재미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전산통계담당)

○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한 최적의 교육행정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으로

i) 학교통합 홈페이지 구축·운영은 접근성 보장과 DB 암호화, 표준 보안 API(공인인증서),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차단과 사이버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교직원 업무 경감은 물론 학교 공유시설 사용절차 간소화로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높이고 있음

ii)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구축·운영은 14개 시·군 전산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주목적은 정보자원 공동 활용이며,
- 또한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재난재해설비, 전산실 통제 시스템을 공동 활용하여 예산의 중복 투자 예방과 장애 대비 통합관제로 무죽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빅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 활동 강화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교육 실시하였음

iii) 스쿨넷서비스(School Network Service) 사업은

- 교육부가 2000년에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인터넷을 5년간 무료 지원하는 사업
- 2004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여 공공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스쿨넷서비스)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 2단계 스쿨넷서비스 주요성으로 이용량 증가, 요금인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들 수 있으며,
- 3단계 스쿨넷서비스로 추진할 주요 내용은 통합집선방식으로 최적의 인터넷 환경 구축,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통합집선망의 보안 강화와 원활한 스쿨넷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며,

iv)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강화된 전산환경 구축으로 안전한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음

③ 최인희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자원과장)

○ 충남교육연구정보원의 정보시스템은

-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 590여 대와
- 컴퓨터의 윈도우 운영체제처럼 시스템 가동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약 1,600여개,
- 각종 업무용 서비스, 민원용 서비스, 교육용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충남교육청 산하 전체 교직원 다수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 서비스의 품질 개선과 데이터의 신뢰성·안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 앞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함은 물론 사업추진에 대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수준 높은 정보화 사업이 되도록 노력 추진하겠음

[3] 자유토론(토론자)

- 충남교육청 시스템 관리·운영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소견은 IT 계열 및 프로그램, 광네트워크, DB 등 기술지원과 운영을 해본 경험자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 시스템 운영에 있어 방향성을 가지고 시스템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 트렌드를 맞춰서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고 관리를 용이하게 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익숙한 시스템에 맞추고 기존시스템의 안정화에만 계속 투입하다보니 예산낭비 및 특정기업 특혜의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봄
- 수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을 텐데, 용량의 문제와 DB 튜닝 해야할 상황이 발생되어 유료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과, CPU용량, 안정성이 확보 될 것임

물론 업체 입장이 아닌 실제 운영한 대기업들 사례들을 참고해보면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만큼 초기비용과 관리비가 더 들겠지만 향후 관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임

[홍성태 맵크크릭브루잉]

- ⇒ 에듀파인이나 업무관리는 이미 서버 가상화를 쓰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CPU할당을 현재 사용중이고 모니터링하면서 적정하게 자원 배분을 위한 작업과 DB튜닝도 직접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는 시·도교육청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 2회 이상 구조진단을 통해서 안정화된 모델임

- 스토리지 스케일 업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이 기존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기존 제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필요함
- 에듀파인시스템이 6년 전에 개발되었기에 충남교육청만 단독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상황이나 기술적인 요건이 안 맞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는 여건임을 참작해야 함

[서영석 선임연구원 답변]

- 에듀파인과 관련된 한 시스템에 대한 것만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규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확장은 물론이고 바로 업무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증설에 있어서 채널개념에서 박스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특정제품만을 늘려야 되는 단점보다 지속적으로 늘리고, 장애 시 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였음

[홍성태 대표]

- 기존서버 내용년수가 6년 정도 사용하였으면 기존 1대를 유지하고, 나머지 3대를 동일제품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4대의 서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가격경쟁)과, 성능, 투명한 계약과정이 될 것이라고 제안함

[조재운 대표]

- 금일 토론회는 충남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에도 집행하게 될 관련 사업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예산절감의 디딤돌이 되었으면 함

[최장 김종문 의원]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충청남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의 세밀한 집행 계획수립
2. 정보화 사업 집행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준수
3.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 검토

〈성 과〉

- 충청남도교육청의 정보화 사업 구축과 관련하여 장비 선정 방안 의견 교환
- 전산장비 구입 시 면밀한 검토로 예산절감 방안 인식
- 정보화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함으로써 전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충남 초·중·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16. 6. 22.(수) / 천안교육지원청>

총 평



충남의 초·중·고 학교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 진단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자리로, 학교체육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의 연계 교육이 되어야 함과 충남의 선수육성(엘리트 선수)을 위한 연계

방안 및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체육을 통한 도민행복 실현과 엘리트 스포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음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 도내 아동 및 청소년 등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지 못하여 운동부족으로 성인병이 증가하는 동시에 교우 관계의 불만족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엘리트 체육 역시 학부모 임금, 학교 숙소, 대회 출전 등 다양한 사례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미래사회와 학교 체육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당국과 학부모 등이 함께 풀어나가야 함

② 지정토론

① 지재규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장학사)

-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건강체력 증진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체활동의 잠재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시킴으로서 인간을 형성시키는 점에서 교육과정 중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 교육부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율체육을 위해 운영되는 스포츠 클럽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로 원만한 교우관계, 학교에 대한 자부심, 인내심 향상, 도전정신 등 학생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발표 했으며,
 - 충남교육청에서도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가치 함양을 통해 또래 문화 및 여가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학교 스포츠 클럽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국내·외, 경제·사회적 발전과 사회통합의 기능 및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엘리트 체육 또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② 김현경(아산남성초등학교 학부모)

- 학생 선수는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기본적 소양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훌륭한 선수의 자격이 갖춰지기 때문에 엘리트 체육의 기초 산실인 기본적 소양을 충족시켜, 진정한 체육인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올바른 인성 함양과,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인성과 지식의 균형 있는 선수육성이 되어야 함

③ 최진혁 (충청남도체육회 운영팀장)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엘리트체육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며, 현재 각 대학교에서는 경영 악화 등으로 운동부 육성을 축소하는 등 대학 선수 수급기반이 약화 되는 현실임
- 충청남도는 체육을 통한 도민 행복실현과 엘리트 스포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숙제를 안고 있으며, 선수 육성을 위한 연계육성 및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정책을 수립할 것임
- 충남체육회에서는 충남도의 체육활성화 방안의 중점 추진과제 실천과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입상 및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교육청과 협업하여 학교체육 꿈나무육성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③ 자유토론(토론자)

- (김현경 학부모님께) 학부모로서 자녀를 학생선수로 육성 시키는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정부(교육부, 교육청)에서는 공부하는 선수상을 적립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를 공부와 병행하는 즉 정상적인 정규수업을 이수해서 좋은 교과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부모 입장은?

[지재규 장학사]

- ⇒ 경기실적으로 지도자의 역량 평가와 학생들의 상급학교로 진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스포츠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스포츠 교육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 학생의 학업능력과 운동선수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계발시키기 위한 현재보다 강력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학업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선수학습권보장제를 위한 노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선수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경 학부모 답변]

- 예전엔 운동선수 출신 즉 기능을 갖춘 체육교사가 임용되었는데 지금은 타 전공자가 체육교사에 입문할 수 있는 제도로 전문실기 능력이 있어도 교사로 채용되는 영역이 좁아졌는데, 타시도의 가점 제도의 장점을 도입해서 채용할 방안이 있는지?

[최진혁 팀장]

- ⇒ 임용고사는 1차에서 1.5배수를 합격시켜서 2차 시험 심층면접(실질 면접,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실현 능력)을 통해 1, 2차 합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실기평가 가점 부분을 40%에서 70%으로 비율을 높였으며
- 또한 운동선수 출신(전국대회 입상자 등) 및 운동부 지도자에게 가산점이 4~5점에서 10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운동선수 출신들이 임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정책이 도입되었음

[지재규 장학사 답변]

4 청중토론(질의답변)

- 충남교육청이 임용조건에서 경력 가산점 제도가 늦게 시행을 한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충남의 체육고에 전문 지도교자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지금이라도 임용조건에 경력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운동부 육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 또한, 전문 체육교사 임용 시 사립학교 인재(전문체육교사)를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동부 학생에게 실질적인 지도(엘리트선수 육성, 부상 재활치료 등)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정책 필요

[권안상고 사립학교 교사]

⇒ 사립학교의 체육교사를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며, 사립학교가 폐교가 되었을 때 일정한 시험을 거쳐 채용되는 사례는 있음

[지재규 장학사 답변]

○ 축구는 유명한 국제대회를 제외하고는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대회 실적(입상)을 위해 감독, 유능한 선수 육성, 행정지원 등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

- 중간 이탈자를 감안해서 정원과 상관없이 선수를 뽑아 선수 부상 시 후보 선수가 원활히 교체될 수 있어야하고,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려면 위장전입 규정도 완화되어야 하며, 1명의 지도자 전임코치(감독)가 혈기 왕성한 중학생 45명을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체 종목 지도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개선점은?

[최안중 학부모]

⇒ 규정에 상관없이 선수정원 및 지도자수를 늘리면 운영자(기관장) 입장에서 관리하기 편리하겠지만 학부모 부담금이 커지고 타 종목과 형평성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 관련 : 학교선진화법 규정

- 지도자 보완책으로 방과 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등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기도 함
- 학생 전입규정을 완화시킨다면 타 시도 유능한 선수 영입으로 입상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 도의 유능한 선수가 진출되는 악순환의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지재규 장학사 답변]

- 충남도의 단체종목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장,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와 회의 및 학교방문의 자리를 마련해서 일선 운동부 학교의 어려운 실정을 파악해서 좋은 정책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음

[홍성현 의원]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체육시간을 등한시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 증진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체육정책 실천
2. 경기력 향상을 위해 부족한 훈련장 시설보완과 훈련지원시스템으로 훈련여건 개선 검토

<성 과>

- 운동부 지도교사 및 지도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인식
- 체조 및 핸드볼 등 소수 운동종목 경기장 시설 확보 등 계기 마련
- 학교체육과 일반체육 협업을 통해 학교체육활성화와 엘리트 스포츠 연계육성 방안이 중요성을 공감

사회심리적외상 청소년 지원방안

<'16. 6. 29.(수)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총 평



사회심리적외상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현실 진단 및 해결점을 찾아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겪고 있는 사회심리적 외상과 사회대응 기반 구축, 심리적외상 지

원자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지자체 · 교육청 ·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전략적 인프라 조성과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주요 토론 내용

① 주제발표

< 신차원 대표 (평화를 만드는 학교) >

- PTSD는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며, 약 8%에서 최대 50%가 만성화 되는 경향
- 트라우마 치료 핵심은 몸과 마음, 신경계와의 연결성으로 안정감 필요

-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은 인지행동치료가 으뜸이지만, 최근 신체 중심(Somatic Experience) 치료법 주목
- 치료를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놀이와 재미 치료 체계의 활성화 필요
 - 탐색 및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창의적 증가
 - 심리상담사는 놀 수 없는 상태에서 놀 수 있는 상태로 데려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콘텐츠, 상담사의 역량 제고와 지속적 관리로 해결할 필요
-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 모두 스트레스는 공존하며 모두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 대안마련 요구

2 지정토론

① 김도윤 부센터장(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심리적외상 상담자는 정서조절의 원리와 방법, 상담자의 자기 이해 및 관리 중요
-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아동청소년 임상심리 평가로 정신과 면담을 병행할 수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절대 부족으로 조기 평가와 조기치료 위한 구조 및 환경조성이 필요
- 돌봄과 치유공동체, 심리적으로 안정된 공동체 지향이 중요
- 학교는 청소년 정신건강의 편견 갖지 않고 중요성을 認知, 지식을 갖추고 청소년의 불안수준 및 감정상태 점검 노력
- 관련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는 PTSD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통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② 최우림 임상심리사(인천북부교육지원청)

- 기관과 기관과의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센터 필요
- 상담 및 치료 전문인력의 활성화 및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③ 주혜선 전임연구원(이화트라우마연구실)

- 심리사회적 지지 역할을 하는 다양한 직군(교사, 전문상담사, 의료진, 소방공무원,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인력에 대한 관심 필요
- 심리적외상 지원자의 역할과 교육, 소진 영향에 대해 관련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관리전략 마련
 - 전문가에 대한 프로그램, 보수교육, 수퍼비전 자문, 간접외상 관련 개인 상담기회 지원, 사례지도 연계 등

④ 이미원 상담복지센터장(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충남지역의 재해·재난·사고에 따른 사회심리적외상 현황 파악과 대응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회복력 요구와 사회심리적 외상에 따른 긴급지원, 교육청 및 관할 시·군청, 경찰청,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연계 지원체제 구축과 연계기관의 역할 필요

⑤ 이공휘 의원(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 청소년기 건강한 심리적 발달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국가와 지방은 심리적외상 지원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함
-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전담기구 설치 운영, 심리적외상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 제도적으로 조례제정 필요성 제언

-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예방, 의료지원, 복구, 구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정 필요
- 재난 사건·사고로 인한 당사자들의 충격, 분노, 혼란, 불안, 우울증 등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은 간과 하고 있는 것이 현실

③ 청중토론(질의답변)

- 청소년진흥원의 사회심리적외상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과정 현황

[질의: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 류순옥]

⇒ '15년도 15개 시·군 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작
기초과정('15)→심화과정('16)→전문가과정 진행예정('17)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 교육단계 전 어시스트과정 진행과 지속적
보조교육으로 체계적 교육 계획, '17년에 정신건강센터, 위센터
선생님들도 참여가능 하도록 함

[답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미연 상담복지센터장]

- 교내 상담선생님 확충, 상담사에게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접근 방식

[질의: 청중]

⇒ '14년부터 선생님들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실제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체화 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20% 미만, 중학교
50% 정도, 고등학교 71% 상담교사가 배치, 초등학교에는 배치가
부족한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답변: 충청남도의회 김연의원]

⇒ 대인관계의 위축과 예민할 경우 많으며, 상담서비스기관의 정보를
제공·의논·연계하도록 추진

[답변: 이화트라우마연구실 주혜선 임상심리사]

결과 및 성과

〈도출과제〉

1. 사회심리적외상 청소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 강구
2. 심리적외상 지원자의 역할, 교육, 소진 등을 위해 관련기관과 지자체와의 연계 마련
3. 통합관리 위한 컨트롤센터와 전문가의 인력의 활성화 및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성 과〉

- 사회심리적외상 청소년 지원 관련 방안 의견 교환
- 청소년이 다양하게 겪고 있는 사회심리적 외상과 지원자를 위한 대책 마련의 공감대 형성
- 심리적외상 지원에 대한 제도적 마련 필요성 인식



타 시 · 도 의회 주요 동향





부산시의회

장애인 의회교실 개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는 6월 30일 부산해남학교(남구 대연동)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제1회 장애인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매년 초·중·고등학생, 여성·시민,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 최초로 사회소외계층들의 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회교실을 추가 운영한 것이다.

이번 장애인 의회교실에서는 본회의 방청, 홍보관 견학, 의원과의 대화 시간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이 참석하여 장애인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학생 1명당 직원 도우미 1명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의회교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준비했다.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이어 8월 10일, 11일 이틀간 초등학생 의회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며, 부산시 소재 초등학생 및 학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공개모집을 통해 의회체험학습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시의회 송대운 교육위원장(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와 공동주관으로 6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초등학교까지 실시하는 학교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참교육학부모회 이건희 대전지부장은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이 실현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송대운 의원은 “중학교 무상급식은 대다수의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청·시청·자치구의 기관별 재정분담 조정을 통해 하루빨리 중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가 학교급식 지원과 별도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학교급식 질 향상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검토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기도의회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동화, 새누리당, 평택4)는 6월 16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연찬회를 갖고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전주 남부시장의 활성화 정책으로 “Let’s 남부시장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하현수 전주 남부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그간의 노력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코자 계획되었다.

전주 남부시장은 1473년 우리나라 향시의 효시로 태동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역사적인 시장으로 한때 호남 최대의 물류집산시장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최근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대화 사업,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한옥마을과 연계한 야시장 개설, 청년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객과 관광객을 유치하여 현재는 가장 활성화된 전통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이동화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바로 전통시장 살리기 인데 이를 위한 새로운 방안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경기도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아울러 “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건의안 채택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의원(농수산위원장, 해남 2)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선물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안이 6월 21일 전남도의회 제3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 하거나, 농수축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가액을 상향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 것으로 일하는 의회의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부에서 지난 5월 13일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서 공직자 등 법적용 대상자에게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개방화 시대 백척간두에 서있는 우리 농수축산업을 온몸으로 지키면서 식량안보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에도 이번 정부의 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 입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수축산물 명절수요가 사실상 사라지고 이로 인해 내수가 침체되는 것은 물론 개방화 시대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를 위해 추진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정부가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효남 의원은 “한해 소비량 가운데 명절 때 사과는 35~40%, 배는 60~70%가 팔리고 추석·설 선물세트 가격이 과일은 5만원 이상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 한우는 98% 이상 된다”며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이 제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지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 · 개정 법령



1. 환자안전법

[시행 2016.7.29.] [법률 제13113호, 2015.1.28.,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자안전 관련 기준 및 체계가 미비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등의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및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6조).

마.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17조).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21호, 2016.6.14., 제정]

□ 제정이유

지역농산물의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361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범위(제6조 및 제7조)
-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농산물 직매장 및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로 하고,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총 유통·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로 함.
- 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제10조 및 별표 1)
- 농산물 유통 분야, 홍보 분야 및 경영·컨설팅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하고, 사무실 및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함.

다.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제12조 및 별표 2)

시·도지사가 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요건을 농산물의 직거래 수요에 적합한 사업장의 규모를 갖추고 판매시설, 소포장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

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 및 별표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나 인증표시의 사용정지기간 중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등에 대하여 1차 위반 시에 인증을 취소하는 등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함.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6.6.23.]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6.21., 제정]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에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 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강원도 삼척시 -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안건번호)의견 16-0088, (회신일자)2016.5.4.

【질의요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비용의 75%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비용의 75%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삼척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조례안」(이하 “삼척시조례안”이라고 함)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에너지자립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삼척시조례안 제2조 본문에서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시 건축물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 및 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 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 52 판결 등 참조), 삼척시조례안 제2조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대하여 「건축법」에 위임의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질 뿐, 이러한 재량권을 넘어서 모든 건축허가·신고 시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건축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함)에 위임의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공공기관(제2호),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제3호) 등 공공성 있는 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재생에너지법은 공공성 있는 기관과 그 외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으로 구분하여 공공성 있는 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

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반·포괄적인 규정을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에 대한 위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위해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75%를 지원한다고 해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비용의 75%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 산업단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안건번호)의견16-0093, (회신일자)2016.5.4.

【질의요지】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자문기관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설치요건에도 부합하므로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밀양시에서는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이하 “환경자문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밀양시 산업단지와 관련한 환경오염문제 및 각종 환경전문지식이 필요한 문제발생시 환경자문위원회를 통해 환경자문을 얻어 청정한 산업단지를 조성·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산업단지조성·운영에 따른 환경 분야 자문, 산업단지 개별 입주 기업의 환경 집진 설비 자문, 산업단지 관련 환경 민원에 대한 자문, 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의 환경자문 요청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제3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밀양시 조례안”이

라 함)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소관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말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참조).

따라서, 밀양시 산업단지와 관련한 환경오염문제와 공장입주에 따른 환경설비시설에 관한 문제 등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사목에서는 자연보호활동을 자치사무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밀양시 내 산업단지와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자문위원회의 법적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는 법령상 권한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고,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지니지 못하는 위원회는 다시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

기관인 위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문기관인 위원회와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구분은 그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바,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법령상 구속력이 있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조언의 성격을 가질 뿐이므로 행정관청은 실제 그 의결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 의사를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관청이 결정하게 되는 반면에, 의결기관인 위원회의 의결내용은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관청은 그 의결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제처 2014. 2. 24 의견 14-0032 제시사례 참조).

밀양시 조례안 제3조 각 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환경자문위원회는 각종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자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밀양시장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밀양시 환경자문위원회는 의결의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살펴보면, 같은 영 제80조제1항제1호에서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한 바, 산업단지의 조성·운영에 따른 환경문제와 개별 기업 환경 집진 설비 등의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밀양시는 자체적으로 「밀양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3조에 따라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는 시민단체와 기

업체 대표 등 민간부문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푸른밀양21 사업협력 추진 및 평가, 환경정책 개발 자문 정책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밀양시내의 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는 환경자문위원회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고, 환경보전위원회 역시 환경기본계획이나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환경자문위원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자문기관설치요건도 충족하므로 조례에 의한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자문기관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설치요건에도 부합하므로 밀양시 산업단지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 의회 자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는 전문(前文)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안전번호)의견16-0111, (회신일자)2016.5.18.

【질의요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 의회 자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는 전문(前文)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조례도 일반적인 법령과 마찬가지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전문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례제정의 취지와 의의 등은 제1조의 목적 규정을 통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전문(前文)이란 특별히 그 법률의 제정취지나 근본이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법률 제정의 유래, 취지, 기본원리, 입법자의 결의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 본칙 앞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전문은 당해 법률의 연혁적·이념적 기초로서 구체적인 법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곧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령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前文)을 두어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헌법이 갖는

지위에 따른 특수한 예로 볼 것이고, 일반적인 법령에서는 전문을 두고 있는 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되고(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p.603 참조), 자치법규인 조례도 우리나라 법령 체제의 일부로서 일반적인 법령과 마찬가지로 제명, 본칙, 부칙으로 구성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전문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례제정의 취지와 의의 등은 제1조의 목적 규정을 통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6. 29. 회신 15-0150 의견 참조)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6년 7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3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